

벤처·스타트업 생태계 지원을 위한 비상장주식 특화 신규 전자등록기관 진입 허용 추진방향

1. 현황

- 전자증권법 시행('19.9월)으로 전자등록업*이 허가제로 도입되었음에도, 지난 6년간 신규 진입이 없는 상황
 - * 증권외 전자등록에 관한 제도운영(전자등록, 전자등록계좌 개설·폐지·관리, 전자등록계좌부 작성·관리, 전자증권 권리행사 대행, 전자증권 발행공시)
- 현재 예탁원*이 유일한 전자등록기관으로, 상장주식·채권 등 정형화된 대규모 투자시장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 중
 - * 전자증권법 제정 당시 법상 허가요건을 갖추고 있었으며, 안정적인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위해 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자등록기관으로 의제
- 비상장주식은 적은 발행규모, 많은 회사수 등으로 예탁원이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 → 전자등록 참여율 저조
- 비상장주식에 특화된 신규 전자등록기관 설립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진입 허용여부를 검토

2. 신규 전자등록기관 허가시 기대효과

① 벤처·스타트업 주식의 법적 안정성 제고

- (현황) 비상장 주식은 대부분* 자체 발행 및 수기 관리됨에 따라 주주권 증명이 어렵고 위·변조에 따른 사기범죄에 취약
 - * 벤처기업 4만여개 가운데 예탁기업은 1,100여개, 전자등록 기업은 300여개에 불과
- (개선) 전자등록 활성화시 위·변조 위험이 낮아지고 거래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

② 중소·벤처기업 자금조달 및 성장 지원

- (현황) 비정형·비상장·소규모 주식은 발행 및 거래가 수기로 관리되어 소수 지분투자자 중심으로 비효율적·폐쇄적으로 운영
- (개선) 비정형·비상장주식 맞춤형 전자등록을 통해 거래 및 관리 편의성 제고 → 중소·벤처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 가능

③ 전자등록기관 간 경쟁을 통한 수수료 인하 등 소비자 편의 향상

- (현황) 전자등록제도가 상장주식을 중심으로 운영 → 상대적으로 비정형·소규모 벤처투자시장 서비스 미흡
- (개선) 경쟁체제 도입을 통해 수수료 인하, 서비스 절차·속도 개선 등 시장 효율성 제고 유도
- * [예] ATS 출범 이후 거래수수료 인하 및 거래시간 연장 등 투자자 편의 제고

➔ (검토) 상기 기대효과와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비상장주식*에 한해 복수 전자등록기관 허용

* 예탁원이 청산·결제 중인 K-OTC시장은 제외

- 허가요건 보완(예: 주식소유 제한, 전자등록적립금 추가적립 등), 심사매뉴얼 마련 후 엄격한 심사를 통해 신규 진입 추진

3. 향후 추진계획(案)

□ '25.12월부터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운영 준비 추진

- 최초의 전자등록기관 허가심사 사례인 만큼 외부 전문가, 관계기관*과 함께 “전자등록기관 허가 TF” 구성·운영

* (예) 법무부, 금감원, 예탁원, 거래소, 코스콤, 금융연, 자본연 등

- 전자증권법령상 허가요건의 구체적 심사기준(매뉴얼) 마련(~'26.上)

- 보완이 필요한 요건 및 절차*는 법무부 협의 등을 거쳐 법령 또는 금융위 고시 개정

* 전자등록기관의 주식 소유 제한, 허가심사 위탁시 근거, 전자등록적립금의 적립 등

-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신규 허가 절차 진행('26.下~)

* 설명회 개최 → 예비허가 신청·심사 → 결과 발표 → 본허가 진행

※ 명의개서대행회사(증권 명의개서·발행 대행, 증권의 배당 지급·등 대행) 신규 진입 (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) 허용 여부·필요성 등도 함께 검토 추진